



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의무

제조업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

* 본 리플릿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잠깐!

▣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·수입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는?

→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(msds.kosha.or.kr)에 제출하여야 함 [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]

※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 500만원 이하 과태료

→ 취급하려는 사업주 ① 해당 물질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②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조치하여야 함 [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]

※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/ 교육 등 조치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

→ 양도, 제공하려는 자 또는 취급하는 사업주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[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]

※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자, 300만원 이하 과태료

▣ 유해·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을 제조·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?

→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[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]

**기계·기구
(9품목)**

- 프레스
- 전단기 및 절곡기
- 크레인
- 리프트
- 압력용기
- 롤러기
- 사출성형기
- 고소작업대
- 곤돌라

**방호장치
(9품목)**

-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
-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
-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
-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
-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
-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
- 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 및 부품
- 가설기자재
-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

**보호구
(12품목)**

-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
- 안전화
- 안전장갑
- 방진마스크
- 방독마스크
- 송기마스크
- 전동식 호흡보호구
- 보호복
- 안전대
-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
- 용접용 보안면
-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

※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→ 사용하는 사업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[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]

**기계·
기구·설비
(13품목)**

- 프레스
- 전단기
- 크레인(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)
- 리프트
- 압력용기
- 곤돌라
-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
-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
- 롤러기(밀폐형 구조 제외)
- 사출성형기(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)
- 고소작업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)
- 컨베이어
- 산업용 로봇

※ 위반 시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
!! 안전검사 대상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?

→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

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



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[산업안전보건법 제15~19조, 제62조]

구분	업종	선임 대상	관련 근거
안전보건관리책임자 (법 제15조)	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	• 상시근로자 50명 이상	시행령 별표2
	그 외 제조업	•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	
안전보건총괄책임자 (법 제62조)	제조업	•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(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자정) ※ 단, 1차 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적용	시행령 제52조
		•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	
관리감독자 (법 제16조)	제조업	• 상시근로자 5명 이상	시행령 별표1
안전관리자 (법 제17조)	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	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	시행령 별표3,4
	그 외 제조업	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,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,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	
보건관리자 (법 제18조)	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	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	시행령 별표5,6
	그 외 제조업	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,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② 상시근로자 1,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	
안전보건관리담당자 (법 제19조)	제조업	•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	시행령 제24조

※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·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/ 직무교육은 [시행규칙 별표4] 참조

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[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]

- **사업주는**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**산업안전보건위원회**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
 - 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 - 단, 산업안전보건법령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·의결해서는 안됨
- **대상**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아래 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
 - ※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제외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(의약품 제외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1차 금속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사무용 기계, 장비 제조업 제외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) 등 [시행령 별표 9] 참조

0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[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]

- **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주는**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**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**
 - 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


안전보건
관리규정 이란?

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



01 안전보건교육 실시 [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제77조]

교육과정	교육시간	관련 근거
정기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사무직·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,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	
채용 시 교육	8시간 이상 (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)	시행규칙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	2시간 이상 (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)	별표4
특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6시간 이상(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,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)*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	

※ 정기·채용·변경 시 교육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, 특별교육의무 위반 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


-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 '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' 포함 (2021.1.19.시행) [시행규칙 별표 5]

02 보호구의 지급 등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, 제33조]

-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,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

0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[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, 제129조, 제130조 등]

- **작업환경측정 실시** [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]
 - ➡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 - ※ 미측정 1,000만원 이하 과태료 /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
- **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1**
- **근로자 건강진단 실시** [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, 제130조]
 - ➡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/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
 - ※ 위반 시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- **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2, 시기 및 주기 시행규칙 별표 23, 검사항목 시행규칙 별표 24**

- ✓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- ✓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✓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

- ✓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✓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
- ※ 세부사항 [시행규칙 별표3] 참조



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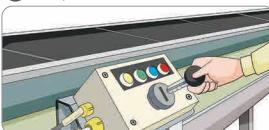
01 끼임재해 예방조치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, 제92조 등]

- 사업주는 근로자의 끼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
① 원동기, 회전축 등에 덮개, 울 등을 설치



② 정비, 보수작업 시 운전정지



③ 기동장치 잠금조치, 표지판 설치



-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·위험한 기계·기구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·정비하여야 함 [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] ※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
대상 및
방호조치

①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

④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

⑦ 작동부분의 돌기부분
문형으로 하거나 덮개 부착

② 월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

⑤ 지게차 헤드가드, 백레스트,
전조등, 후미등, 안전벨트

⑧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
덮개 부착 또는 방호망 설치

③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

⑥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

⑨ 회전기계 물림점 덮개 또는 울 설치

02 위험성평가·방지계획서 등 [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, 제42조 등]

- 위험성평가 실시 [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]

→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
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·제출 [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]

→ 사업주는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,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 ※ 위반 시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
! 제출대상

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(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)으로서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
기계·기구·설비 등을 전부 설치·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

②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계·기구·설비를 설치·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

0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[산업안전보건법 제63~65조]

- 안전보건조치 및 합동점검 등 실시 [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, 제64조]

→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

※ 안전보건조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(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
→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

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·운영, ② 작업장 순회점검(2일에 1회 이상), ③ 안전보건교육장소자료 제공 및 교육실시 확인,
④ 경보체계 운영·대피 훈련(발파작업, 화재·폭발 등), ⑤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(휴게시설, 세면·목욕시설 등)

→ 도급인, 관계수급인, 이들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,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(선박 및 보트
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) 실시하여야 함

- 작업 전 안전보건정보 제공[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]

→ 도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

※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
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유해성·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제조·사용·운반·저장
하는 설비를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 또는 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
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



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

• 산업재해 발생보고 [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]

- ▶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,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(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)하여야 함
※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, 1,500만원 이하 과태료

• 산업재해 발생기록 보존 [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]

-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
-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
-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
- 재해발생지 계획
- ※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 신청서 사본(재해 재발방지 계획 첨부)으로 대체 가능

•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[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]

- ▶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,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※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 /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
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처벌



산업안전보건법

-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 -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½까지加重처벌
 - 유죄판결(선고유예 제외) 선고받거나 약식명령 고지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
 - 근로자 사망 시 범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

중대재해처벌법

-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‘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’
 - ▶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/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-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‘법인이나 기관 등’
 - ▶ 사망자 발생 50억원 이하의 벌금 /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10억원 이하의 벌금

중대재해처벌법
시행시기

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2022.1.27.)

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-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2024.1.27.)



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시면
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

OPEN

